#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8호 2020. 10. 8.(목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422호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423호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전부개정조례 6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24호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12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0-187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최기*)···· 13
○ 하동군 고시 제2020-188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강정*)···· 14
○ 하동군 고시 제2020-189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김희*)···· 15
○ 하동군 고시 제2020-190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유덕*)···· 16
○ 하동군 고시 제2020-191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서훈*)···· 17
○ 하동군 고시 제2020-192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김명*)···· 18
○ 하동군 고시 제2020-193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김현*)···· 19
○ 하동군 고시 제2020-194호 공유수면 점용 변경 허가(유광* 외 18인)···· 20
○ 하동군 고시 제2020-196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준공인가 및 고시(배미*)··· 21
○ 하동군 고시 제2020-19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2
○ 하동군 고시 제2020-199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25
○ 하동군 고시 제2020-200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정권*)···· 42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0-1212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3
○ 하동군 공고 제2020-1213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52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0-1226호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8
○ 하동군 공고 제2020-1232호 2020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 60
○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20-32호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 작업원 모집 공고····· 62
○ 하동군 공고 제2020-1235호 하동 도시계획도로[대로2-1]개설공사 보상계획(변경) 공고 68
○ 하동군 공고 제2020-1236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보상계획(변경) 공고 73
○ 하동군 공고 제2020-1237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개설공사 보상계획(변경) 공고 78
○ 하동군 공고 제2020-1238호 군 계획시설(하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의견청취 공람공고 83
○ 하동군 공고 제2020-1239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의견청취 공람공고 85
○ 하동군 공고 제2020-1240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의견청취 공람공고 87


| 회<br>람 |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22 호

##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하동세계차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용도)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
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엑스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에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23 호

##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운영 조례”를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기능, 위치) ① 기숙사의 명칭은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한다.

② 기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 숙박 장소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 휴식·숙박 장소

3.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장소

4.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숙사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126-2에 둔다.

제3조(관리·운영) 군수는 기숙사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4조(사용허가)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

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일 전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숙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2. 타인의 기숙사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사람
4.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
5. 기숙사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숙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일련번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 여)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자택) | | |
| | 휴대전화) | | |
| E-mail | | | |
| 면제(감면)사유 | | | |
| 사용기간 | | | |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

일련번호:

# 사용(변경) 허가 통지서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사용기간 | 20 . . .~ 20 . . . ( 박 일) | | |
| 사 용 료 (감면금액) | 원 | | |

위와 같이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표 1]

#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 구 분 | | 사용료(1일) | 비 고 |
|---|---|---|---|
| 숙박 | 1인 1실 | 30,000원 | ▫ 1일(박) :<br>당일 14:00～익일12:00까지 |
| | 2인 1실 | 20,000원 | |
| | 1인 1실(장애인실)<br>(기숙사) | 20,000원 | |

※ 사용료는 1실 기준 금액임

[별표 2]

#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 구 분 | 반환기준 | 비고 |
|---|---|---|
|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 |
| 2) 사용자가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청 | | |
| -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 |
| -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납부한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24 호

##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

# 하천점용 허가증

제2020-187호

| | | | |
|---|---|---|---|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 | |
| 성명(법인명) | 최기* | | |
| 생년월일<br>(법인등록번호) | | | |
| 하천명칭 | 관곡천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 점용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221 | | |
| 점용면적 | 1,340㎡ | | |
| 최초허가일 | 2010-10-31 | | |
| 점용기간 | 2020년 10월 31일부터 ~ 2025년 10월 30일까지 (5년간) | | |
| 허가조건 |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br>2. 하천점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전대, 양도·양수 또는 상속(승계)할 수 없습니다.<br>3.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사용, 점용목적변경 및 시설물설치 및 하천의 형상변경, 굴착, 훼손행위는 일절 할 수 없습니다.<br>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br>5. 하천 내 선박운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운항구역과 운항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청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br>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br>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br>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br>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br>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br>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br>9. 하천, 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br>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12. 하천점용은 타인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안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br>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br>14. 유선 및 도선사업자, 내수면어업자 등 타인의 시설물 및 영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35조에 따라 피허가자의 책임 하에 일체의 보상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하천점용과 관련된 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책임져야 합니다.<br>15.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어선, 어구, 어망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운항하여야 합니다.<br>16.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br>17.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br>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br>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br>20. 위의 각항을 위배하거나, 공익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제한 또는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하 동 군 수 [인]

2020년 9 월 28 일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

# 하천점용 허가증

제2020-188호

| | | | |
|---|---|---|---|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 | |
| **성명(법인명)** | 강정*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하천명칭** | 횡천강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 **점용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0-1 | | |
| **점용면적** | 3,360㎡ | | |
| **최초허가일** | 2000-09-06 | | |
| **점용기간** | 2020년 09월 03일부터 ~ 2025년 09월 02일까지 (5년간) | | |
| **허가조건** |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br>2. 하천점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전대, 양도·양수 또는 상속(승계)할 수 없습니다.<br>3.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사용, 점용목적변경 및 시설물설치 및 하천의 형상변경, 굴착, 훼손행위는 일절 할 수 없습니다.<br>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br>5. 하천 내 선박운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운항구역과 운항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청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br>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br>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br>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br>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br>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br>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br>9. 하천, 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br>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12. 하천점용은 타인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안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br>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br>14. 유선 및 도선사업자, 내수면어업자 등 타인의 시설물 및 영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35조에 따라 피허가자의 책임 하에 일체의 보상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하천점용과 관련된 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책임져야 합니다.<br>15.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어선, 어구, 어망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운항하여야 합니다.<br>16.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br>17.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br>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br>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br>20. 위의 각항을 위배하거나, 공익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제한 또는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하 동 군 수 [인]

2020년 9 월 28 일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

# 하천점용 허가증

제2020-189호

| | | | |
|---|---|---|---|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 | |
| 성명(법인명) | 김희* | | |
| 생년월일<br>(법인등록번호) | | | |
| 하천명칭 | 횡천강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 점용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0-1<br>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491-3 | | |
| 점용면적 | 12,249㎡ | | |
| 최초허가일 | 2000-09-06 | | |
| 점용기간 | 2020년 09월 06일부터 ~ 2025년 09월 05일까지 (5년간) | | |
| 허가조건 |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br>2. 하천점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전대, 양도·양수 또는 상속(승계)할 수 없습니다.<br>3.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사용, 점용목적변경 및 시설물설치 및 하천의 형상변경, 굴착, 훼손행위는 일절 할 수 없습니다.<br>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br>5. 하천 내 선박운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운항구역과 운항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청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br>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br>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br>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br>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br>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br>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br>9. 하천, 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br>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12. 하천점용은 타인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안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br>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br>14. 유선 및 도선사업자, 내수면어업자 등 타인의 시설물 및 영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35조에 따라 피허가자의 책임 하에 일체의 보상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하천점용과 관련된 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책임져야 합니다.<br>15.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어선, 어구, 어망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운항하여야 합니다.<br>16. 점용을 종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br>17.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br>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br>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br>20. 위의 각항을 위배하거나, 공익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제한 또는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하 동 군 수 [인]

2020년 9 월 28 일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

# 하천점용 허가증

제2020-190호

| | | | |
|---|---|---|---|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 | |
| **성명(법인명)** | 유덕*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하천명칭** | 신기천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 **점용장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65 (인접 : 부춘리 산41-4) | | |
| **점용면적** | 348㎡ | | |
| **최초허가일** | 2015-08-11 | | |
| **점용기간** | 2020년 8월 11일부터 ~ 2025년 8월 10일까지 (5년간) | | |
| **허가조건** |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br>2. 하천점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전대, 양도·양수 또는 상속(승계)할 수 없습니다.<br>3.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사용, 점용목적변경 및 시설물설치 및 하천의 형상변경, 굴착, 훼손행위는 일절 할 수 없습니다.<br>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br>5. 하천 내 선박운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운항구역과 운항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청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br>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br>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br>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br>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br>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br>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br>9. 하천, 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br>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br>12. 하천점용은 타인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안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br>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br>14. 유선 및 도선사업자, 내수면어업자 등 타인의 시설물 및 영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35조에 따라 피허가자의 책임 하에 일체의 보상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하천점용과 관련된 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책임져야 합니다.<br>15.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어선, 어구, 어망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운항하여야 합니다.<br>16.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br>17.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br>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br>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br>20. 위의 각항을 위배하거나, 공익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제한 또는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하 동 군 수 [인]

2020년 월 일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20-19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 | | |
|---|---|---|
| 허가 대상자 | 성 명<br>**서훈0**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 주 소<br>**하동군 악양면** | |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046-13**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204㎡**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20. 07. 23. ~ 2025. 07. 22. (5년간)**

점용·사용의 유형
**일반 공작물**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20-19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 | | |
|---|---|---|
| 허가 대상자 | 성 명<br>김명0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 주 소<br>하동군 악양면 | |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292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80㎡ (또는 ㎥)

목적
농경지

기간
2020. 07. 28. ~ 2025. 07. 27. (5년간)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20-19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 | | |
|---|---|---|
| 허가 대상자 | 성 명<br>김현0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 주 소<br>하동군 옥종면 | |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070-5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26㎡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20. 09. 21. ~ 2025. 09. 20. (5년간)

점용·사용의 유형
공유수면 대지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2.>

허가번호 제 2020-194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 | | |
|---|---|---|
| 허가 대상자 | 성명<br>유 광 0 외 18인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br>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산단로 12길 19-4(이태원동) | |

| | | | |
|---|---|---|---|
| 변경사항 | | 변경 전<br>하동군 고시 제2019-158호 | 변경 후 |
| | 지번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75-45번지 | |
| | **면적** | **27㎡** | **33㎡** |
| | 목적 | 발전시설(태양광발전소)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아스콘포장) | |
| | 기간 | 2019. 6. ~ 2024. 6. (5년간) | |
| | 조건 |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br>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br>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br>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br>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하 동 군 수**

210㎜×297㎜[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고시 제2020-196호

# 준 공 검 사 서

| | | | | |
|---|---|---|---|---|
| 신청인 | 성 명 | 배미* | 주민등록번호<br>(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 | | |
| 1. 개간의 장소 |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736-9번지, 산74-7번지 | | |
| 2. 승인의 면적 | | 736-9번지 208㎡ 중 135㎡, 산74-7번지 1,318㎡ 중 421㎡ | | |
| 3. 준공의 면적 | | 556㎡ | | |
| 4. 개간의 용도 | | 농지조성(밭작물) | | |
| 5. 토지 조서 | | | | |

| 토지소재지 | | | | | | 준공후 토지 이용별 면적 | | | |
|---|---|---|---|---|---|---|---|---|---|
| 군 | 면 | 리 | 지번 | 지목 | 승인면적 | 전 | 답 | 기타 | 계 |
| 하동 | 화개 | 운수 | 736-9 | 임 | 135㎡ | 135㎡ | | | |
| 하동 | 화개 | 운수 | 산74-7 | 임 | 421㎡ | 421㎡ | | |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함.

2020. 9. 29.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20 - 198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29.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2 외 6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7건) | | | | |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917 외 1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2건) | | | | |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길 25-12 외 1건

| 도로명주소 |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
| 별 지 참 조(2건)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9.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 건물번호 부여

| 업무 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주소 고시일 | 이동 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1-2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2 | 2020 0929 | | 2007 0618 |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509-2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청학로 130 | 2020 0929 | | 2009 0302 |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653-7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15-1 | 2020 0929 | | 2007 0618 |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988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구학길 86-20 | 2020 0929 | | 2007 0618 | 오래된 학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구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95-5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윗담길 21 | 2020 0929 | | 2008 0402 | 명덕마을고유명칭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명덕윗담길로 명명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115-1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134-1 | 2020 0929 | | 2009 0302 | 북쪽에 있는 큰 고개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471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61 | 2020 0929 | | 2008 0402 | 횡천강을 끼고 있다하여 횡천강변길로 명명 | |

## ■ 건물번호 분할

| 업무 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주소 고시일 | 이동 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 번호 분할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917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915 | 2020 0929 | | 2009 0710 | 섬진강 지역명 사용 | |
| 건물 번호 분할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917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917 | 2011 0729 | | 2009 0710 | 섬진강 지역명 사용 | |

## ■ 건물번호 폐지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이동사유 |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길 25-12 | 20200929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당마을길 12-4 | 20200929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하동군 고시 제2020-199호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 하 동 군 수

■ 지적도근점 수정 (세계측지계 좌표값 설정 및 수정)

| 기준점명칭 | 기준점번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설치)일자 | 표지재질 | 측량성과보관장소 | 비고 |
|---|---|---|---|---|---|---|---|---|---|---|---|---|
| | | | 위도 | 경도 | 표고 | | X (N) | Y (E) | | | | |
| 지적도근점 | 32 | 하동읍 광평리 270-3 | 35-03-50.4828 | 127-44-52.9711 | 6.115 | 중부 | 274453.578 | 268235.322 | 2020.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144.97 | 268161.58 | | | | 지역 |
| 지적도근점 | 33 | 하동읍 광평리 451-1 | 35-03-49.7024 | 127-44-52.6536 | 6.318 | 중부 | 274429.467 | 268227.457 | 2020.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121.02 | 268153.79 | | | | 지역 |
| 지적도근점 | 34 | 하동읍 광평리 451-1 | 35-03-47.7780 | 127-44-53.3301 | 6.116 | 중부 | 274370.287 | 268245.045 | 2020.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061.87 | 268171.40 | | | | 지역 |
| 지적도근점 | 37 | 하동읍 읍내리 167 | 35-03-51.6318 | 127-45-09.1457 | 4.149 | 중부 | 274492.069 | 268644.900 | 2020.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183.81 | 268571.06 | | | | 지역 |
| 지적도근점 | 50 | 하동읍 읍내리 1549 | 35-04-16.3107 | 127-45-03.6110 | 7.102 | 중부 | 275251.569 | 268498.931 | 2020.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943.26 | 268424.61 | | | | 지역 |
| 지적도근점 | 51 | 하동읍 읍내리 336 | 35-04-16.3720 | 127-45-02.3930 | 13.969 | 중부 | 275253.225 | 268468.056 | 2020.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944.92 | 268393.70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58 | 하동읍 읍내리 789-7 | 35-04-24.2048 | 127-44-40.0716 | 43.403 | 중부 | 275490.379 | 267900.706 | 2020. 05.28. | 기타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189.92 | 267850.7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83 | 하동읍 읍내리 265-1 | 35-04-12.5808 | 127-44-46.6104 | 5.901 | 중부 | 275133.388 | 268069.054 | 2020. 05.28. | 철재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825.16 | 267994.7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84 | 하동읍 읍내리 1549 | 35-04-15.9765 | 127-44-47.5707 | 7.232 | 중부 | 275238.218 | 268092.601 | 2020. 05.28. | 철재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929.97 | 268018.1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85 | 하동읍 읍내리 265-62 | 35-04-10.2445 | 127-44-49.5315 | 5.863 | 중부 | 275061.941 | 268143.604 | 2020. 05.28. | 철재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758.42 | 268063.4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56 | 하동읍 비파리 417-3 | 35-04-19.9929 | 127-45-31.3602 | 26.315 | 중부 | 275370.372 | 269201.136 | 2020. 05.28. | 기타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062.79 | 269124.9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63 | 적량면 동산리 1031 | 35-04-41.2952 | 127-46-24.1134 | 11.340 | 중부 | 276037.137 | 270532.616 | 2020. 05.28. | 철재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729.08 | 270458.3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75 | 적량면 고절리 1276 | 35-04-05.1964 | 127-47-05.7212 | 5.952 | 중부 | 274932.874 | 271595.485 | 2020. 05.28. | 철재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625.08 | 271521.1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78 | 적량면 동리 1392 | 35-06-49.9315 | 127-46-24.8531 | 67.238 | 중부 | 280001.631 | 270520.581 | 2020. 05.28. | 철재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693.41 | 270446.3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79 | 적량면 고절리 817-9 | 35-03-41.4789 | 127-47-11.9472 | 14.886 | 중부 | 274203.190 | 271759.004 | 2020. 05.28. | 기타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895.52 | 271684.6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82 | 적량면 동리 1077-9 | 35-07-03.1392 | 127-46-10.2543 | 75.100 | 중부 | 280405.808 | 270147.743 | 2020. 05.28. | 철재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097.55 | 270073.5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84 | 적량면 동리 1258 | 35-07-10.8998 | 127-46-04.6382 | 79.312 | 중부 | 280643.878 | 270003.687 | 2020. 05.28. | 철재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335.60 | 269929.4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92 | 적량면 고절리 739 | 35-03-39.4652 | 127-47-15.4354 | 28.736 | 중부 | 274141.830 | 271847.883 | 2020. 05.28. | 기타 | 하동 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833.67 | 271773.66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412 | 적량면 동산리 486-3 | 35-05-18.5523 | 127-47-00.2424 | 79.477 | 중부 | 277192.480 | 271438.903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6878.25 | 271366.7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19 | 적량면 동산리 633-3 | 35-04-41.4315 | 127-46-46.4650 | 15.495 | 중부 | 276045.748 | 271098.849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737.84 | 271024.4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24 | 적량면 우계리 58-1 | 35-05-23.8367 | 127-46-26.9114 | 21.226 | 중부 | 277348.741 | 270593.319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7040.50 | 270519.1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27 | 적량면 우계리 1169 | 35-05-38.4889 | 127-46-17.6952 | 29.303 | 중부 | 277798.485 | 270356.368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7490.22 | 270282.1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29 | 적량면 우계리 1169 | 35-05-44.5972 | 127-46-14.4479 | 35.252 | 중부 | 277986.094 | 270272.661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7677.89 | 270198.5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39 | 적량면 동산리 633-3 | 35-04-33.9647 | 127-46-43.9992 | 26.286 | 중부 | 275815.148 | 271038.177 | 2020. 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507.22 | 270963.7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40 | 적량면 동산리 633-3 | 35-04-43.6623 | 127-46-55.4146 | 9.887 | 중부 | 276116.271 | 271325.043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808.38 | 271250.6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41 | 적량면 동산리 1787 | 35-04-40.9323 | 127-47-17.6277 | 10.857 | 중부 | 276036.570 | 271888.461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728.78 | 271814.1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45 | 적량면 동산리 산31-3 | 35-04-27.1660 | 127-47-33.8856 | 14.142 | 중부 | 275615.586 | 272303.721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306.90 | 272229.5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62 | 적량면 동리 1431 | 35-06-12.5914 | 127-46-43.4638 | 41.034 | 중부 | 278854.544 | 271000.864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8546.32 | 270926.7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65 | 적량면 고절리 940 | 35-04-24.9674 | 127-47-04.9610 | 7.383 | 중부 | 275542.031 | 271571.428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234.31 | 271497.0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67 | 적량면 고절리 1276 | 35-04-17.8434 | 127-47-04.0204 | 6.815 | 중부 | 275322.293 | 271549.326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014.55 | 271474.9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70 | 적량면 동산리 1774-4 | 35-04-33.5755 | 127-47-37.5195 | 15.463 | 중부 | 275813.845 | 272394.216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5505.67 | 272320.06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473 | 적량면 동산리 1773-4 | 35-04-58.3142 | 127-47-51.2352 | 14.809 | 중부 | 276579.024 | 272735.606 | 2020.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6270.86 | 272661.3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75 | 횡천면 전대리 산167-4 | 35-09-18.9797 | 127-49-13.1437 | 174.745 | 중부 | 284629.185 | 274744.433 | 2020.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4320.89 | 274670.2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78 | 횡천면 전대리 1163-1 | 35-09-05.1218 | 127-49-19.6454 | 151.503 | 중부 | 284203.461 | 274912.525 | 2020.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3895.21 | 274838.3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81 | 횡천면 전대리 680-4 | 35-08-39.2097 | 127-49-25.1614 | 127.495 | 중부 | 283406.040 | 275058.753 | 2020.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3097.87 | 274984.6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82 | 횡천면 전대리 1384 | 35-08-32.8625 | 127-49-24.7278 | 118.418 | 중부 | 283210.335 | 275049.397 | 2020.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2902.51 | 274975.2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84 | 횡천면 전대리 521-5 | 35-08-17.8021 | 127-49-31.0410 | 109.759 | 중부 | 282747.519 | 275213.062 | 2020.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2439.36 | 275138.9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88 | 횡천면 전대리 1390 | 35-07-59.9644 | 127-49-20.5047 | 98.082 | 중부 | 282195.579 | 274950.866 | 2020.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1887.42 | 274876.7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496 | 횡천면 애치리 943-4 | 35-07-21.2301 | 127-49-28.5195 | 71.454 | 중부 | 281003.520 | 275163.667 | 2020.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695.49 | 275089.4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07 | 횡천면 전대리 1137 | 35-09-12.1380 | 127-49-13.9954 | 167.613 | 중부 | 284418.509 | 274767.729 | 2020.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4110.30 | 274693.6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15 | 횡천면 횡천리 745-4 | 35-06-35.4417 | 127-48-35.7436 | 26.551 | 중부 | 279581.426 | 273838.813 | 2020.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273.33 | 273764.6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20 | 횡천면 횡천리 472-11 | 35-06-28.6695 | 127-48-37.9081 | 25.663 | 중부 | 279373.165 | 273895.327 | 2020.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065.05 | 273821.2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21 | 횡천면 월평리 896-4 | 35-08-16.3578 | 127-48-44.6661 | 54.666 | 중부 | 282693.351 | 274039.399 | 2020.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2387.27 | 273965.6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23 | 횡천면 횡천리 514-1 | 35-06-33.6991 | 127-48-39.9379 | 26.479 | 중부 | 279528.586 | 273945.470 | 2020.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220.46 | 273871.32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526 | 횡천면 횡천리 1085-4 | 35-06-30.3297 | 127-48-31.5084 | 24.192 | 중부 | 279423.011 | 273732.837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114.90 | 273658.6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33 | 횡천면 횡천리 1085-3 | 35-06-32.3067 | 127-48-37.3663 | 24.208 | 중부 | 279485.144 | 273880.692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177.03 | 273806.5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34 | 횡천면 횡천리 1085-3 | 35-06-31.6382 | 127-48-36.8365 | 24.280 | 중부 | 279464.433 | 273867.442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156.32 | 273793.3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36 | 횡천면 횡천리 1085-4 | 35-06-29.2566 | 127-48-35.7136 | 24.231 | 중부 | 279390.805 | 273839.603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082.67 | 273765.4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39 | 횡천면 횡천리 1083-2 | 35-06-36.0482 | 127-48-38.3947 | 24.888 | 중부 | 279600.662 | 273905.798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292.60 | 273831.6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53 | 횡천면 전대리 산126-1 | 35-09-40.7377 | 127-49-26.8308 | 346.830 | 중부 | 285302.602 | 275085.310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4994.50 | 275011.4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56 | 횡천면 전대리 산128-1 | 35-09-52.8099 | 127-49-22.4945 | 374.678 | 중부 | 285673.744 | 274972.484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5365.47 | 274898.6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57 | 횡천면 전대리 산128-1 | 35-09-55.1664 | 127-49-19.7083 | 377.726 | 중부 | 285745.784 | 274901.373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5437.47 | 274827.5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58 | 횡천면 전대리 산128-1 | 35-09-57.6377 | 127-49-18.6008 | 376.381 | 중부 | 285821.714 | 274872.714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5513.39 | 274798.8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59 | 횡천면 전대리 산128-1 | 35-09-55.6072 | 127-49-14.8657 | 371.146 | 중부 | 285758.356 | 274778.706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5449.99 | 274704.8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64 | 횡천면 애치리 578-2 | 35-07-57.9416 | 127-49-57.7716 | 153.598 | 중부 | 282141.081 | 275894.894 | 2020. 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1832.75 | 275821.1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72 | 횡천면 횡천리 1115 | 35-06-46.6198 | 127-48-20.3127 | 56.130 | 중부 | 279922.749 | 273445.241 | 2020. 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614.57 | 273371.0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73 | 횡천면 횡천리 1115 | 35-06-46.6084 | 127-48-24.3848 | 47.033 | 중부 | 279923.232 | 273548.367 | 2020. 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615.07 | 273474.16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 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574 | 횡천면 횡천리 810-1 | 35-06-42.2212 | 127-48-21.9830 | 61.585 | 중부 | 279787.532 | 273488.637 | 2020. 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480.74 | 273415.0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76 | 횡천면 횡천리 665-4 | 35-06-49.4090 | 127-48-25.1838 | 41.794 | 중부 | 280009.706 | 273567.900 | 2020. 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701.51 | 273493.7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584 | 횡천면 남산리 435-2 | 35-05-17.3403 | 127-47-47.1664 | 13.989 | 중부 | 277164.550 | 272627.846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6856.39 | 272553.9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601 | 횡천면 횡천리 564-16 | 35-06-33.1560 | 127-48-50.6797 | 28.872 | 중부 | 279514.069 | 274217.642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205.83 | 274143.5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623 | 횡천면 횡천리 557-5 | 35-06-31.5822 | 127-48-55.7917 | 30.668 | 중부 | 279466.626 | 274347.501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9158.40 | 274273.3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634 | 횡천면 횡천리 494-3 | 35-06-21.6922 | 127-48-35.4006 | 23.727 | 중부 | 279157.616 | 273833.572 | 2020. 05.28.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8849.40 | 273759.4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638 | 횡천면 횡천리 356-4 | 35-06-08.9954 | 127-48-47.7453 | 58.524 | 중부 | 278768.868 | 274149.407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8460.66 | 274075.3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639 | 횡천면 횡천리 338 | 35-06-11.6702 | 127-48-53.1571 | 60.847 | 중부 | 278852.422 | 274285.797 | 2020. 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8544.23 | 274211.6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640 | 횡천면 횡천리 1022-4 | 35-06-10.3656 | 127-48-57.6021 | 56.291 | 중부 | 278813.137 | 274398.703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8502.75 | 274329.1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759 | 고전면 범아리 989-3 | 35-00-47.3092 | 127-47-49.6297 | 80.912 | 중부 | 268843.202 | 272756.741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535.18 | 272682.4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763 | 고전면 범아리 988-1 | 35-01-00.1833 | 127-48-06.8410 | 64.325 | 중부 | 269243.450 | 273189.941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935.36 | 273115.6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769 | 금남면 덕천리 1051-5 | 34-59-19.5250 | 127-49-47.8301 | 37.607 | 중부 | 266162.289 | 275776.150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5849.99 | 275734.0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808 | 금남면 대송리 970 | 34-58-01.1587 | 127-50-53.3640 | 46.868 | 중부 | 263761.163 | 277458.731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3453.04 | 277384.14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812 | 금남면 대송리 781 | 34-58-00.8413 | 127-50-40.2489 | 20.044 | 중부 | 263748.566 | 277126.098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3440.51 | 277051.4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865 | 금남면 계천리 741-3 | 35-00-05.9873 | 127-49-15.7531 | 4.208 | 중부 | 267587.439 | 274950.839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279.55 | 274876.4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892 | 진교면 양포리 55-31 | 35-00-02.1476 | 127-54-56.9655 | 5.237 | 중부 | 267544.337 | 283604.495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235.89 | 283530.0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894 | 진교면 양포리 998 | 35-00-07.1695 | 127-54-56.3597 | 1.773 | 중부 | 267698.964 | 283587.714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390.56 | 283513.2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895 | 진교면 양포리 55-188 | 35-00-09.5858 | 127-54-45.5342 | 2.585 | 중부 | 267770.916 | 283312.518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462.57 | 283238.0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898 | 진교면 양포리 114-2 | 35-00-22.920 | 127-54-38.4373 | 6.149 | 중부 | 268180.211 | 283128.805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871.90 | 283054.4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099 | 진교면 박달리 1368 | 35-04-10.0374 | 127-52-12.2431 | 127.056 | 중부 | 275146.517 | 279360.745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838.07 | 279286.7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05 | 양보면 운암리 1020-3 | 35-02-45.1857 | 127-50-41.6889 | 25.396 | 중부 | 272511.804 | 277088.492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203.51 | 277014.3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06 | 양보면 운암리 241-2 | 35-02-44.0198 | 127-50-47.5254 | 27.528 | 중부 | 272477.126 | 277236.721 | 2020. 05.29. | 맨홀식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168.83 | 277162.5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14 | 양보면 박달리 산64-1 | 35-04-06.3321 | 127-52-01.4180 | 108.296 | 중부 | 275029.939 | 279087.458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721.49 | 279013.4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15 | 양보면 박달리 193 | 35-04-03.5908 | 127-52-01.4477 | 109.134 | 중부 | 274945.462 | 279088.946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637.02 | 279014.9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26 | 양보면 운암리 356-2 | 35-03-00.620 | 127-50-44.0104 | 31.982 | 중부 | 272987.960 | 277143.298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679.67 | 277069.6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29 | 양보면 통정리 862 | 35-03-58.2734 | 127-51-15.3705 | 131.429 | 중부 | 274771.511 | 277922.848 | 2020. 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4463.34 | 277849.11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1153 | 양보면 장암리 480 | 35-03-35.1584 | 127-50-00.7823 | 46.472 | 중부 | 274043.155 | 276038.862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734.85 | 275965.1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55 | 양보면 통정리 267 | 35-03-23.3797 | 127-50-06.7212 | 42.863 | 중부 | 273681.415 | 276192.396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373.35 | 276118.7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57 | 양보면 장암리 304 | 35-03-10.080 | 127-50-03.8836 | 40.225 | 중부 | 273270.937 | 276123.917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962.54 | 276050.1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58 | 양보면 장암리 303 | 35-03-05.5155 | 127-50-03.7754 | 39.423 | 중부 | 273130.246 | 276122.351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821.87 | 276048.5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59 | 양보면 운암리 1023 | 35-02-57.0510 | 127-50-43.4146 | 28.300 | 중부 | 272877.842 | 277129.133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569.58 | 277054.9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62 | 양보면 운암리 1032 | 35-03-03.0210 | 127-50-25.6678 | 32.702 | 중부 | 273058.027 | 276677.815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749.64 | 276603.7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65 | 양보면 장암리 424-2 | 35-03-17.8196 | 127-49-58.890 | 44.549 | 중부 | 273508.402 | 275995.374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200.01 | 275921.5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66 | 양보면 장암리 산179-3 | 35-03-21.6608 | 127-49-58.0948 | 45.774 | 중부 | 273626.611 | 275974.234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318.24 | 275900.4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67 | 양보면 장암리 437-2 | 35-03-25.6893 | 127-49-56.7238 | 49.139 | 중부 | 273750.473 | 275938.455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442.12 | 275864.6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72 | 양보면 지례리 113-3 | 35-02-51.1443 | 127-52-09.8349 | 64.954 | 중부 | 272714.631 | 279320.920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411.11 | 279251.1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87 | 양보면 지례리 203-9 | 35-02-17.1555 | 127-52-28.2080 | 87.761 | 중부 | 271671.225 | 279795.751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1362.77 | 279721.7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89 | 양보면 지례리 203-9 | 35-02-14.1219 | 127-52-26.7481 | 78.119 | 중부 | 271577.409 | 279759.567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1268.92 | 279685.4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190 | 양보면 지례리 203-10 | 35-02-12.5105 | 127-52-26.8138 | 72.342 | 중부 | 271527.766 | 279761.667 | 2020. 05.29.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1219.30 | 279687.57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1215 | 양보면 우복리 1384-2 | 35-05-41.2850 | 127-50-13.1036 | 123.836 | 중부 | 277932.780 | 276318.453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7624.51 | 276244.5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223 | 양보면 우복리 1469-11 | 35-05-19.7812 | 127-50-28.0275 | 92.560 | 중부 | 277273.252 | 276702.063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6964.99 | 276628.1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244 | 양보면 감당리 산177-2 | 35-05-55.4316 | 127-49-53.2396 | 167.593 | 중부 | 278364.545 | 275811.673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8056.37 | 275737.5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245 | 양보면 감당리 산177-1 | 35-05-53.5750 | 127-49-51.4115 | 164.272 | 중부 | 278306.942 | 275765.846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7998.77 | 275691.7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542 | 옥종면 청룡리 28 | 35-10-44.5450 | 127-53-13.4007 | 83.204 | 중부 | 287318.390 | 280802.010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7010.26 | 280728.1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544 | 옥종면 청룡리 1084 | 35-10-41.0865 | 127-53-18.0120 | 83.664 | 중부 | 287212.844 | 280919.644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6904.57 | 280845.7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545 | 옥종면 청룡리 산18-1 | 35-10-47.9155 | 127-53-21.2612 | 100.366 | 중부 | 287424.042 | 280999.978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7115.77 | 280926.0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1550 | 옥종면 병천리 1012 | 35-10-59.8743 | 127-53-23.0701 | 74.503 | 중부 | 287793.009 | 281042.453 | 2020. 05.29.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7484.86 | 280968.3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2116 | 적량면 동리 1435 | 35-07-12.5191 | 127-46-17.4964 | 91.991 | 중부 | 280696.301 | 270328.890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387.98 | 270254.7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2117 | 적량면 동리 971-1 | 35-07-14.8376 | 127-46-23.4616 | 109.097 | 중부 | 280768.923 | 270479.383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460.74 | 270405.1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2118 | 적량면 동리 898-4 | 35-07-16.6157 | 127-46-20.1291 | 107.590 | 중부 | 280823.067 | 270394.574 | 2020. 05.28. | 기타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508.99 | 270319.0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2468 | 악양면 동매리 743 | 35-11-14.0065 | 127-42-47.9451 | 151.422 | 중부 | 288099.002 | 264969.402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7791.07 | 264895.6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2469 | 악양면 동매리 920-3 | 35-11-15.8409 | 127-42-50.0357 | 151.174 | 중부 | 288155.917 | 265021.888 | 2020. 05.28. | 철재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7847.98 | 264948.16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3217 | 화개면 탑리 621-5 | 35-11-25.1302 | 127-37-25.5433 | 16.696 | 중부 | 288386.968 | 256810.318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078.89 | 256736.9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18 | 화개면 탑리 719-1 | 35-11-23.4561 | 127-37-24.0910 | 18.507 | 중부 | 288335.144 | 256773.900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027.09 | 256700.5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19 | 화개면 탑리 867-7 | 35-11-20.1485 | 127-37-19.4238 | 21.318 | 중부 | 288232.471 | 256656.459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7924.49 | 256583.0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20 | 악양면 동매리 588-16 | 35-11-28.7412 | 127-43-05.4104 | 139.951 | 중부 | 288556.287 | 265408.003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248.21 | 265334.3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21 | 악양면 동매리 588-10 | 35-11-30.1137 | 127-43-07.0899 | 150.046 | 중부 | 288598.893 | 265450.187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290.79 | 265376.5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23 | 악양면 동매리 산3 | 35-11-34.1167 | 127-43-08.4223 | 158.658 | 중부 | 288722.502 | 265483.004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414.41 | 265409.3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24 | 악양면 동매리 588-1 | 35-11-35.9601 | 127-43-05.9841 | 158.978 | 중부 | 288778.867 | 265420.909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470.79 | 265347.3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25 | 악양면 동매리 913 | 35-11-37.1191 | 127-43-02.7833 | 155.987 | 중부 | 288814.002 | 265339.677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505.95 | 265266.0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26 | 악양면 동매리 913 | 35-11-33.8893 | 127-43-03.0251 | 148.852 | 중부 | 288714.507 | 265346.511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406.44 | 265272.8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27 | 악양면 동매리 588-11 | 35-11-31.4788 | 127-43-02.6009 | 144.448 | 중부 | 288640.142 | 265336.317 | 2020. 05.28. | 못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332.10 | 265262.6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28 | 악양면 등촌리 360 | 35-11-41.0109 | 127-42-41.1251 | 243.080 | 중부 | 288930.006 | 264790.897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622.11 | 264717.2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29 | 악양면 등촌리 358 | 35-11-41.1448 | 127-42-44.5961 | 240.564 | 중부 | 288934.761 | 264878.676 | 2020. 05.28. | 못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626.87 | 264804.9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30 | 악양면 등촌리 380-2 | 35-11-45.2437 | 127-42-44.0301 | 249.087 | 중부 | 289060.979 | 264863.452 | 2020. 05.28. | 옥상물 구멍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753.14 | 264789.22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3231 | 악양면 등촌리 245 | 35-11-41.7489 | 127-42-47.6173 | 231.517 | 중부 | 288953.925 | 264954.975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646.02 | 264881.2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32 | 악양면 동매리 737 | 35-11-12.5376 | 127-42-42.7122 | 165.502 | 중부 | 288052.786 | 264837.330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7744.87 | 264763.5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33 | 악양면 동매리 736 | 35-11-14.4860 | 127-42-44.8614 | 158.881 | 중부 | 288113.220 | 264891.276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7805.32 | 264817.5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34 | 악양면 동매리 688-6 | 35-11-17.8546 | 127-42-45.6978 | 162.457 | 중부 | 288217.187 | 264911.694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7909.24 | 264837.9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35 | 악양면 동매리 683-7 | 35-11-25.9766 | 127-42-44.8440 | 182.699 | 중부 | 288467.341 | 264888.298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159.40 | 264814.5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36 | 적량면 동리 1044-3 | 35-07-06.2078 | 127-46-13.6869 | 79.429 | 중부 | 280501.048 | 270233.932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192.76 | 270159.7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37 | 적량면 동리 997 | 35-07-13.8067 | 127-46-20.9285 | 98.553 | 중부 | 280736.655 | 270415.488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428.30 | 270341.3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38 | 북천면 서황리 650-3 | 35-07-34.1738 | 127-52-37.0918 | 94.186 | 중부 | 281443.224 | 279934.977 | 2020. 05.29. | PVC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1134.58 | 279861.2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39 | 북천면 서황리 650-1 | 35-07-31.6941 | 127-52-32.4148 | 100.461 | 중부 | 281365.762 | 279817.227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1057.17 | 279743.4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40 | 북천면 서황리 650-4 | 35-07-33.8488 | 127-52-32.4289 | 104.569 | 중부 | 281432.168 | 279817.001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1123.57 | 279743.2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41 | 북천면 서황리 647 | 35-07-31.5742 | 127-52-27.1955 | 110.612 | 중부 | 281360.905 | 279685.106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1052.32 | 279611.3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42 | 북천면 서황리 647 | 35-07-30.7214 | 127-52-22.0360 | 123.469 | 중부 | 281333.475 | 279554.697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1024.89 | 279480.9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43 | 북천면 서황리 846 | 35-07-27.8998 | 127-52-22.2834 | 125.858 | 중부 | 281246.574 | 279561.724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938.00 | 279487.97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3244 | 북천면 서황리 1337 | 35-07-23.4004 | 127-52-58.7562 | 86.591 | 중부 | 281116.048 | 280486.459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807.37 | 280412.7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45 | 북천면 서황리 278-1 | 35-07-21.0044 | 127-52-52.4956 | 91.066 | 중부 | 281040.802 | 280328.589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732.13 | 280254.8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46 | 북천면 서황리 278-1 | 35-07-20.1735 | 127-52-49.4354 | 92.337 | 중부 | 281014.512 | 280251.328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705.82 | 280177.5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47 | 북천면 서황리 750-1 | 35-07-19.4902 | 127-52-36.4812 | 107.252 | 중부 | 280990.558 | 279923.500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681.84 | 279849.7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48 | 북천면 서황리 750-1 | 35-07-20.0878 | 127-52-34.1098 | 109.893 | 중부 | 281008.447 | 279863.293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699.73 | 279789.5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49 | 북천면 서황리 740 | 35-07-21.5338 | 127-52-28.8950 | 119.764 | 중부 | 281051.851 | 279730.855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0743.08 | 279657.0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50 | 악양면 등촌리 248 | 35-11-27.9243 | 127-42-56.9329 | 175.271 | 중부 | 288529.565 | 265193.709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8221.47 | 265119.9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51 | 양보면 지례리 635-4 | 35-03-06.9029 | 127-51-35.8733 | 73.407 | 중부 | 273192.824 | 278456.006 | 2020. 05.29. | 옥상 각인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884.68 | 278381.6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52 | 양보면 지례리 1219 | 35-03-10.4925 | 127-51-32.3374 | 62.363 | 중부 | 273302.676 | 278365.444 | 2020. 05.29. | 각인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2994.51 | 278291.1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53 | 양보면 지례리 1219 | 35-03-12.0919 | 127-51-29.3419 | 59.025 | 중부 | 273351.316 | 278289.107 | 2020. 05.29. | 각인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043.16 | 278214.7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54 | 양보면 지례리 1219 | 35-03-13.8156 | 127-51-25.4793 | 52.557 | 중부 | 273403.596 | 278190.762 | 2020. 05.29. | 각인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095.44 | 278116.5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55 | 양보면 지례리 978 | 35-03-16.9856 | 127-51-24.0338 | 49.214 | 중부 | 273500.974 | 278153.292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3192.83 | 278079.0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56 | 진교면 송원리 62-1 | 35-01-42.7461 | 127-55-01.4972 | 1.996 | 중부 | 270645.664 | 283690.937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0337.45 | 283616.89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 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3257 | 진교면 송원리 864 | 35-01-55.8240 | 127-55-02.4197 | 6.488 | 중부 | 271048.918 | 283710.619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0740.60 | 283636.5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58 | 진교면 양포리 703-3 | 35-00-10.6246 | 127-54-29.8247 | 7.438 | 중부 | 267799.298 | 282913.862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490.95 | 282839.3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59 | 진교면 양포리 703 | 35-00-08.0267 | 127-54-32.3650 | 3.350 | 중부 | 267719.823 | 282979.008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411.49 | 282904.4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60 | 진교면 양포리 51-3 | 35-00-03.2949 | 127-54-53.1721 | 2.127 | 중부 | 267578.814 | 283507.974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270.43 | 283433.5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61 | 진교면 양포리 970 | 35-00-01.2676 | 127-54-56.1406 | 0.836 | 중부 | 267517.025 | 283583.827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208.56 | 283509.3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62 | 금남면 계천리 산7-15 | 34-59-59.0231 | 127-49-20.8847 | 10.465 | 중부 | 267373.888 | 275082.732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066.03 | 275008.3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63 | 금남면 계천리 741-10 | 35-00-08.9522 | 127-49-12.9284 | 2.721 | 중부 | 267678.221 | 274878.458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370.30 | 274804.0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64 | 금남면 계천리 171-3 | 35-00-14.4041 | 127-49-11.4268 | 7.093 | 중부 | 267845.927 | 274839.002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537.99 | 274764.5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65 | 고전면 범아리 920-2 | 35-01-01.7577 | 127-48-02.5384 | 69.482 | 중부 | 269291.092 | 273080.464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983.03 | 273006.2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66 | 고전면 범아리 989-2 | 35-00-54.9859 | 127-47-47.8733 | 78.974 | 중부 | 269079.426 | 272710.321 | 2020. 05.29. | PVC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771.47 | 272636.0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67 | 고전면 범아리 산74-1 | 35-00-55.2972 | 127-47-44.6322 | 83.938 | 중부 | 269088.363 | 272628.068 | 2020. 05.29. | PVC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780.39 | 272553.8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68 | 고전면 범아리 989-5 | 35-00-51.8239 | 127-47-46.0486 | 79.642 | 중부 | 268981.612 | 272664.833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673.62 | 272590.5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71 | 고전면 범아리 1026 | 35-00-47.8449 | 127-47-53.6348 | 86.344 | 중부 | 268860.521 | 272858.156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552.50 | 272783.85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3272 | 고전면 성천리 843 | 35-02-12.0066 | 127-48-54.7258 | 35.819 | 중부 | 271466.735 | 274385.911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71158.49 | 274311.6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74 | 악양면 신성리 481-4 | 35-09-12.4806 | 127-43-01.7717 | 83.673 | 중부 | 284356.273 | 265346.227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4048.28 | 265271.9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75 | 악양면 신성리 518-1 | 35-09-12.2057 | 127-42-57.1501 | 68.333 | 중부 | 284346.957 | 265229.310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4039.00 | 265155.0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76 | 악양면 신성리 1327 | 35-09-10.1477 | 127-42-54.3386 | 57.380 | 중부 | 284283.021 | 265158.603 | 2020. 05.28. | PVC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3975.06 | 265084.3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77 | 악양면 신성리 1375 | 35-09-08.9343 | 127-43-05.6359 | 94.469 | 중부 | 284247.686 | 265444.822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3939.69 | 265370.5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78 | 악양면 신성리 1376 | 35-09-09.0957 | 127-42-58.8549 | 70.596 | 중부 | 284251.422 | 265273.150 | 2020. 05.28.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83943.43 | 265198.8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79 | 진교면 고룡리 128-11 | 35-01-08.9124 | 127-54-25.870 | 8.202 | 중부 | 269594.714 | 282797.261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9286.33 | 282723.0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80 | 진교면 고룡리 171-3 | 35-01-01.5731 | 127-54-28.2070 | 13.113 | 중부 | 269369.067 | 282858.567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9060.70 | 282784.3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81 | 진교면 고룡리 산106-10 | 35-00-57.0138 | 127-54-29.3972 | 16.094 | 중부 | 269228.833 | 282890.021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920.44 | 282815.76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82 | 진교면 고룡리 63-1 | 35-00-51.0169 | 127-54-30.1647 | 18.582 | 중부 | 269044.196 | 282911.162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735.82 | 282836.8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83 | 진교면 양포리 산65-15 | 35-00-42.1293 | 127-54-30.9395 | 12.242 | 중부 | 268770.474 | 282933.298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462.11 | 282859.0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84 | 진교면 양포리 266-1 | 35-00-39.1464 | 127-54-31.0489 | 12.090 | 중부 | 268678.571 | 282936.909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370.22 | 282862.6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85 | 진교면 양포리 264-2 | 35-00-33.7443 | 127-54-30.5926 | 17.233 | 중부 | 268511.982 | 282926.854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8203.58 | 282852.54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3286 | 진교면 양포리 800-4 | 35-00-26.3736 | 127-54-29.9017 | 22.903 | 중부 | 268284.671 | 282911.400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976.32 | 282837.0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87 | 진교면 양포리 587-1 | 35-00-20.7775 | 127-54-29.3765 | 19.916 | 중부 | 268112.091 | 282899.653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803.71 | 282825.3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88 | 진교면 양포리 570-1 | 35-00-14.9864 | 127-54-28.7653 | 12.647 | 중부 | 267933.476 | 282885.775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625.10 | 282811.4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89 | 진교면 양포리 724-1 | 35-00-07.9246 | 127-54-28.1233 | 8.606 | 중부 | 267715.698 | 282871.475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407.31 | 282797.1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90 | 진교면 양포리 770-4 | 35-00-03.3104 | 127-54-27.2560 | 7.825 | 중부 | 267573.298 | 282850.774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264.92 | 282776.4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91 | 진교면 양포리 산84-4 | 34-59-56.9186 | 127-54-25.9396 | 17.904 | 중부 | 267376.011 | 282819.180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7067.60 | 282744.83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92 | 진교면 양포리 산84-7 | 34-59-53.5131 | 127-54-24.9131 | 24.505 | 중부 | 267270.821 | 282794.102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6962.43 | 282719.7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93 | 진교면 술상리 산7-9 | 34-59-50.6925 | 127-54-22.7944 | 28.266 | 중부 | 267183.408 | 282741.163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6875.03 | 282666.7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94 | 진교면 술상리 107-3 | 34-59-48.6306 | 127-54-19.2350 | 29.000 | 중부 | 267119.045 | 282651.472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6810.65 | 282577.1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95 | 진교면 술상리 603-2 | 34-59-46.9463 | 127-54-13.2568 | 32.737 | 중부 | 267065.767 | 282500.335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6757.41 | 282425.98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96 | 진교면 술상리 603-2 | 34-59-45.4134 | 127-54-04.7609 | 47.412 | 중부 | 267016.578 | 282285.305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6708.21 | 282210.9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97 | 진교면 술상리 산51-3 | 34-59-42.3401 | 127-53-58.1470 | 61.186 | 중부 | 266920.354 | 282118.430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6612.01 | 282044.0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298 | 진교면 술상리 산23-12 | 34-59-36.2378 | 127-53-55.0855 | 74.567 | 중부 | 266731.593 | 282042.480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6423.25 | 281968.12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3299 | 진교면 술상리 산23-14 | 34-59-29.7178 | 127-53-53.7248 | 86.528 | 중부 | 266530.350 | 282009.778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6222.00 | 281935.4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0 | 금남면 중평리 산91-7 | 34-59-24.6297 | 127-53-52.7031 | 84.832 | 중부 | 266373.312 | 281985.275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6064.96 | 281910.9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1 | 금남면 중평리 산92-2 | 34-59-16.3562 | 127-53-51.5152 | 75.619 | 중부 | 266118.067 | 281957.440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5809.71 | 281883.0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2 | 금남면 중평리 산92-29 | 34-59-09.3996 | 127-53-50.6582 | 71.403 | 중부 | 265903.484 | 281937.627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5595.12 | 281863.2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3 | 금남면 중평리 814-3 | 34-59-01.1565 | 127-53-50.1851 | 67.352 | 중부 | 265649.338 | 281927.910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5340.96 | 281853.4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4 | 금남면 중평리 752-2 | 34-58-53.7158 | 127-53-50.0922 | 64.416 | 중부 | 265420.010 | 281927.613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5111.67 | 281853.2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5 | 금남면 중평리 774-1 | 34-58-46.2434 | 127-53-40.7304 | 63.628 | 중부 | 265187.595 | 281692.215 | 2020.05.29. | 각인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4879.25 | 281617.7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6 | 금남면 중평리 산79-8 | 34-58-37.9339 | 127-53-36.9370 | 56.002 | 중부 | 264930.653 | 281598.287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4622.33 | 281523.84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7 | 금남면 대치리 129-3 | 34-58-32.2666 | 127-53-34.4193 | 54.398 | 중부 | 264755.427 | 281535.983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4447.07 | 281461.5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8 | 금남면 대치리 212-15 | 34-58-25.4559 | 127-53-23.5926 | 42.254 | 중부 | 264543.086 | 281263.217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4234.74 | 281188.79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09 | 금남면 대치리 88-8 | 34-58-13.8150 | 127-53-19.1745 | 29.816 | 중부 | 264183.341 | 281154.334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3875.01 | 281079.90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10 | 금남면 대치리 499-1 | 34-58-06.8136 | 127-53-13.9878 | 32.619 | 중부 | 263966.402 | 281024.672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3658.06 | 280950.2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11 | 금남면 대치리 460-2 | 34-57-59.2298 | 127-53-06.6395 | 41.644 | 중부 | 263731.031 | 280840.324 | 2020.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3422.67 | 280765.86 | | | | 지역 |

| 기준점 명 칭 | 기준점 번 호 | 토지소재 |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 | | 원점 | 평면좌표 | | 관측 (설치) 일자 | 표지 재질 | 측량 성과 보관 장소 | 비고 |
|---|---|---|---|---|---|---|---|---|---|---|---|---|
| | | | 위 도 | 경 도 | 표 고 | | X | Y | | | | |
| 지적 도근점 | 3312 | 금남면 대치리 산101-59 | 34-57-53.7972 | 127-52-59.5212 | 50.363 | 중부 | 263562.013 | 280661.219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3253.67 | 280586.77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13 | 금남면 대치리 산101-69 | 34-57-46.3344 | 127-52-54.8577 | 53.330 | 중부 | 263330.981 | 280544.937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3022.64 | 280470.4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14 | 금남면 노량리 산6-46 | 34-57-40.8609 | 127-52-55.4017 | 48.831 | 중부 | 263162.422 | 280560.226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2854.11 | 280485.75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15 | 금남면 노량리 산6-14 | 34-57-34.6360 | 127-52-57.3872 | 38.561 | 중부 | 262971.028 | 280612.292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2662.68 | 280537.8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16 | 금남면 노량리 19-4 | 34-57-26.0304 | 127-52-57.9189 | 22.397 | 중부 | 262705.940 | 280628.125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2397.59 | 280553.62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17 | 금남면 노량리 791-1 | 34-57-15.1708 | 127-52-55.5567 | 6.639 | 중부 | 262370.742 | 280571.141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2062.39 | 280496.61 | | | | 지역 |
| 지적 도근점 | 3318 | 금남면 노량리 826-1 | 34-57-10.8065 | 127-52-52.5553 | 4.680 | 중부 | 262235.573 | 280496.172 | 2020. 05.29. | 표철 | 하동군청 민원과 | 세계 |
| | | | | | | | 161927.24 | 280421.65 | | | | 지역 |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20-200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 | | |
|---|---|---|
| 허가 대상자 | 성 명<br>정권*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 주 소<br>하동군 적량면 | |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1765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50㎡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20. 09. 28. ~ 2025. 09. 27. (5년간)

점용·사용의 유형
기타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공고 제 2020 - 1212 호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5조)

라. 마을만들기사업 기본원칙 및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21조)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8조제2항 제1호에 따름) 하동군 (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 880-2516, FAX 880-2509, h9004231@korea.kr)

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붙임 1】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과「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4.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5.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읍·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심의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하동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예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별 관련사항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부군수 및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건설교통과장, 사업 지역 읍·면장
2. 사업 추진위원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하동남해지사 임직원, 대학교수, 여성농업인 대표, 시장번영회 대표, 사업지역의 마을대표 등
2. 그 외 민간전문가 등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개발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4.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이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비 등 지원)** ①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단,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4조(시설 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4.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불 불가

**제15조(시설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16조(기본 원칙)**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성의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17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18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인재 발굴·육성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20 - 1213 호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안)

2. **제안 이유**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가능 하고, 사문화된「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8조제2항 제1호에 따름) 하동군 (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 880-2516, FAX 880-2509, h9004231@korea.kr) 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붙임 1】

하동군 훈령 제 호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폐지(안)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업무 분장업무 규정

[시행 2017.12.29.]

( 제정) 2015.11.05 훈령 제332호
(일부개정) 2016.01.13 훈령 제335호 하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7.12.29 훈령 제348호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하동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괄정비규정

**관리책임부서** :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연 락 처** : 055-880-25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상 사업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2. “총괄부서“란 「하동군 담당업무 분장운영 규정」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말한다. <개정 2016.1.13 >
3. “실행부서“란 「하동군 담당업무 분장운영 규정」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4. “기타부서“란 총괄 및 실행부서를 제외한 실・과・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별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담당지정)** 부서장은 [별표]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별로 개인별 담당을 지정한다.

**제6조(담당업무조정)** 담당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지도감독)** 부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의 지휘를 받아 담당의 업무처리 전반을 지도 감독한다.

**제8조(기획조정실)**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평가 및 사업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총괄 지휘한다. <개정 2016.1.13.>

**제9조(건설교통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하며, 완료지구의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산단조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금남면 소재지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괄부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상하수도사업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괄부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산림녹지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테마공원(섬진강재첩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괄부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부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완료 후 성공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 및 관리부서와 읍·면의 요청시 해당 부서의 연계사업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읍·면)** 읍면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홍보와 협력을 유도하고, 총괄부서 및 실행 부서를 지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정) 2016.1.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하동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괄정비규정) 2017.1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0 - 1226호

#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28. ~ 10. 13. (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교육기간 : 2020.09.01.~2020.11.30. (3개월) /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라.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www.cdec.kr)에서 시청각 교육 이수

2.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연차 미상향 처리(2020년도 한해 과태료 미부과)

※ 문의처 : 하동군 안전총괄과 민방위안전담당 (☎ 055-880-2265)

2020. 9. 28.

하 동 군 수

## 붙임 : 공시송달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반송사유 | 반송일 | 교육구분 |
|---|---|---|---|---|---|
| 1 | 김*현 |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107동 202호(해양파크빌아파트) | 폐문부재 | 2020.9.9 | 사이버교육 |
| 2 | 최*원 |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154번길 49 109동 1306호 | 폐문부재 | 2020.9.9 | 사이버교육 |
| 3 | 신*철 |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 101동 508호 | 폐문부재 | 2020.9.9 | 사이버교육 |
| 4 | 감*수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15, 908호(오동동, 고려타워) | 수취인불명 | 2020.9.9 | 사이버교육 |
| 5 | 서*익 | 하동군 하동읍 산복2길 80-3 | 주소불명 | 2020.9.9. | 사이버교육 |

하동군 공고 제2020 - 1232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행 공고

우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하동군에서 직접 긴급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
2. 방제작업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감염우려목 및 기타고사목 제거·방제작업
3.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4. 방제대상지 : 하동군 전지역
5. 사업기간 : 2020. 10. ~ 2021. 03. (6개월 간)
6. 방제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벌채 후 파쇄·훈증 등 방제처리
   ○ 이동 파쇄 산물은 산업자원으로 활용
7. 공고기간 : **2020. 10. 05 ~ 2020. 11. 04. (30일간)**
8.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9.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으로 인해 재선충병의 확산은 물론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가 되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동군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공원보호담당(☎055-880-2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5.

하 동 군 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2020 - 01호

| | |
|---|---|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타고사목 |
| | 면적(ha) 48,606 |
| | 소재지 하동군 관내 전지역 |
| 방제기간 | 2020. 10. 06. ~ 2021. 03. 31. |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 훈증 [ ] 소각 [ √ ] 파쇄<br>[ ]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직경 2㎝의 가지에도 산란하기 때문에 2㎝이상의 가지까지 모두 방제처리<br>-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적으로 방제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방제 조치 시행하여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2020년 10월 05일

하 동 군 수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20 - 32호

#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 작업원 모집 공고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을 위하여 꽃 심기 및 제초작업 등에 필요한 작업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6일

## 화 개 면 장

1. **모집인원** : 3명
   ※ 모집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접수기간** : 2020. 10. 06(화) ~ 10. 12(월)(9:00 ~ 18:00)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5. **접수장소** : 화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6. **작업형태** :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을 위하여 화개면 일원 꽃 심기 및 제초작업 시행

7. **응시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화개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다.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라.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8. 응시자격의 제한

가. 꽃 심기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한 작업과 작업도구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자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9.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라. 재산세 등 완납여부 확인( ※ 면에서 자체 확인)

## 10.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채용 예정인원 초과시)

**11. 합격자 발표 :** 2020. 10. 13(화) / 개별통보
※ 면접시험 시행 시 합격자 발표는 연기될 수 있음.

**12. 근로기간 :** 2020. 10. 13 ~ 예산 소진 시까지

## 13.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9:00~18:00)**
나.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다. 임 금 : **68,720원/1일**
라.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마. 1개월간 계속 참여 시 월 1일의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14. 종사업무

가. 화개면 일원 꽃심기 및 제초작업 등

나. 기타 “사계절 꽃이 피는 화개 조성” 관련 업무

## 15.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선발된 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라. 지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여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화개면 산업경제부서(055-880-60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사계절 꽃이 피는 화개 조성 작업원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 | |
|---|---|---|---|---|---|
| 성 명 | | 남, 여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연락전화번호 | |

| 주요이력사항 | | | | | | | |
|---|---|---|---|---|---|---|---|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 | | | | |
| 자격 면허 | 1.<br>2.<br>3. |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 |
| | | | 1. | 주 | | | |
| | | | 2. | 주 | | | |
| | | | 3. | 주 | | | |
| 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 | |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
| 취업 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 |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 기타사항 | | | | |
|---|---|---|---|---|
| 주 거 상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 |
| 세대원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

| 경력사항 | ①<br>②<br>③ |
|---|---|
| 기타사항 기술 (본인) | |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 기간 및 참여사업 : |
|---|---|

〈붙임 2〉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십리벚꽃길 및 가든화개 정비 작업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하동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계약 체결, 4대보험의 신고, 임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메일 등 연락처, 자격사항 등
-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십리벚꽃길 및 가든화개 정비 작업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하동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 고용지원센터(워크넷) : 중복 취업여부 확인 등
-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센터 등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농협 등 금융기관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 · 적립
- ○ 경찰서 : 신원조사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하동군 공고 제2020-1235호

# 하동 도시계획도로[대로2-1]개설공사 보상계획(변경)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 도시계획도로(대로2-1)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변경)**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 하 동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나.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대로2-1]개설공사
다.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2-2번지 일원
라. 사 업 규 모 : 도로확장 L=128m
마. 사 업 기 간 : 2020. 7. 1. ~ 2021. 6. 30. (변경)

### 2. 보상대상 : 토지(4필지, 1,028㎡) 및 물건(총 11건) 등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3. 공고기간 : 2020.10.07. ~ 2020.10.22.(15일간)

### 4. 열람기간 : 2020.10.07. ~ 2020.10.22.(15일간)

###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2020.10.8.~2020.11.7.)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계(☎ 055-880-2239)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다. 보상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라. 감정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계획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정평가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마.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바.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 [하동도시계획도로(대로2-1호선) 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 일련번호 | 소재지(하동군) | 지번(원래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 감정평가 | 보상금액 | 소유자 | |
|---|---|---|---|---|---|---|---|---|---|
| | | | | 기존 | 변경 | 평균 | | 주소 | 성명 |
| 1 | 읍내리 | 179-5<br>(179-2) | 답 | 52 | 52 | |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 | 김종* |
| 2 | 읍내리 | 179-6<br>(179-3) | 답 | 29<br>2 | 28<br>7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br>*** | 김영* |
| 3 | 읍내리 | 180-9<br>(180-2) | 답 | 59<br>5 | 59<br>2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80-1<br>*** | 김동*<br>외1명 |
| 4 | 읍내리 | 222-24<br>(222-2) | 대 | 98 | 97 | |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br>611-53 *** | 강효* |

# 보상금 지급계획조서(지장물)

| 연번 | 소재지(하동군)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 평가가액 | | 보상금액 | 소유자 | |
|---|---|---|---|---|---|---|---|---|---|---|---|
| | | | | | | | 평균단가 | | | 주소 | 성명 |
| | | | | | | | 단가 | 금액 | | | |
| 1 | 하동읍 읍내리 | 222-24 | 동백나무 | R8 | 1 | 주 | | | | | |
| | | 〃 | 매실나무 | R10 | 1 | 주 | | | | | |
| | | 〃 | 사철나무 | 20년생 | 3 | 주 | | | | | |
| 2 | 하동읍 읍내리 | 222-24 | 간판 | 철재형강 0.6*4H6 | 1 | 식 | | | | | |
| 3 | 하동읍 읍내리 | 222-24 | 사무실 | 컨테이너 3*9 | 1 | 식 | | | | | |
| | | 〃 | 물품이설비 | - | 1 | 식 | | | | | |
| | | 〃 | 바닥 | 아스콘 4*19 | 76 | ㎡ | | | | | |
| 4 | 하동읍 읍내리 | 222-24 | 사무실 | 컨테이너 3*9 | 1 | 식 | | | | | |
| | | 〃 | 물품이설비 | 에어컨포함 | 1 | 식 | | | | | |
| | | 〃 | 바닥 | 아스콘 4*19 | 76 | ㎡ | | | | | |
| | | 〃 | 간판 | 철재 1*6 | 1 | 식 | | | | | |
| | 합 계 | | | | | | | 0 | 0 | | |

# 이 의 신 청 서

| | | | | |
|---|---|---|---|---|
| ①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대로2-1)개설공사 | | | |
| ② 위 치 | | | | |
| ③ 사 업 시 행 자 | 하동군수 | | | |
|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⑤ 이의신청 내용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추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하동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아 래 -

○ 추천업체 :

○ 추 천 일 : 2020. . .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유자 | | 소유자확인 | 전화번호 | 비고 |
|---|---|---|---|---|---|---|---|
|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하동군 공고 제2020-1236호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보상계획(변경)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였으나 토지의 분할 및 사업기간 등 보상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계획(변경)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 하 동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나.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다.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173-2 ~ 하동읍 비파리 760
라. 사 업 규 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 = 0.2km
마. 사 업 기 간 : 2020. 7. 31. ~ 2021. 10. 1.(변경)

### 2. 보상대상 : 토지(3필지, 689㎡) 및 물건(총 24건) 등 (변경)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3. 공고기간 : 2020.10.07. ~ 2020.10.22.(15일간)

### 4. 열람기간 : 2020.10.07. ~ 2020.10.22.(15일간)

###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8)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마.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8)**

# [하동도시계획도로(중로3-10호선) 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 일련번호 | 소재지(하동군) | 지번(원래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감정평가 평균 | 보상금액 | 소유자 주소 | 소유자 성명 |
|---|---|---|---|---|---|---|---|---|
| 1 | 하동읍 읍내리 | 173-10 (173-4) | 대 | 165 | | | 하동군하동읍굴다리2길*** | 정*근 |
| 2 | 하동읍 광평리 | 2-8 | 답 | 476*20 99/419 8 | | |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 최*순 |
| 3 | 하동읍 광평리 | 6-3 (6-1) | 답 | 48 | | | 하동읍 광평리 *** | 이*자 |
| | 합계 | | | | | | | |

# 보상금 지급계획조서(지장물)

| 연번 | 소재지(하동군) | 지번(원래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 평가가액 평균단가 단가 | 평가가액 평균단가 금액 | 보상금액 | 소유자 주소 | 소유자 성명 |
|---|---|---|---|---|---|---|---|---|---|---|---|
| 1 | 하동읍 읍내리 | 173-10 (173-4) | 가로등 | 철재 H:4 | 2 | 식 | | | | | 정*근 |
| | | | 가로등 | 철재(소형) | 1 | 식 | | | | | |
| | | | 간판 | 철재1*4 H:4 | 1 | 식 | | | | | |
| | | | 조경석 | 이설 | 1 | 식 | | | | | |
| | | | 바닥 | 콘크리트 12*20 | 240 | ㎡ | | | | | |
| | | | 화단 | 자연석 4*12 | 48 | ㎡ | | | | | |
| | | | 화단 | 블록 1*10 | 1 | 식 | | | | | |
| | | | 소나무(조형) | R25 | 1 | 주 | | | | | |
| | | | 소나무(조형) | R8 | 1 | 주 | | | | | |
| | | | 소나무 | R20 | 1 | 주 | | | | | |
| | | | 소나무 | R8 | 1 | 주 | | | | | |
| | | | 소나무 | R10 | 3 | 주 | | | | | |
| | | | 소나무 | R5 | 1 | 주 | | | | | |
| | | | 영산홍 | 3년생 | 1 | 주 | | | | | |
| | | | 목련나무 | R3 | 1 | 주 | | | | | |
| | | | 블루베리나무 | 5년생 | 1 | 주 | | | | | |
| | | | 동백나무 | R15 | 1 | 주 | | | | | |
| | | | 동백나무 | R3 | 1 | 주 | | | | | |
| | | | 동백나무(조형) | R20 | 1 | 주 | | | | | |
| | | | 동백나무 | R5 | 1 | 주 | | | | | |
| | | | 동백나무 | R6 | 1 | 주 | | | | | |
| | | | 황칠나무 | R15 | 1 | 주 | | | | | |
| | | | 마삭줄(조형) | R5 | 1 | 주 | | | | | |
| | | | 마삭줄(조형) | R2 | 9 | 주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이 의 신 청 서

| | | | | |
|---|---|---|---|---|
| ①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 | | |
| ② 위 치 | | | | |
| ③ 사 업 시 행 자 | 하동군수 | | | |
|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⑤ 이의신청 내용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추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하동도시계획도로 중로 3-10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아 래 -

○ 추천업체 :

○ 추 천 일 : 2020. . .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유자 | | 소유자확인 | 전화번호 | 비고 |
|---|---|---|---|---|---|---|---|
|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하동군 공고 제2020-1237호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개설공사 보상계획 (변경)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였으나 토지의 분할 및 사업기간 등 보상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계획(변경)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07일

## 하 동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나.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개설공사
다.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74-3 ~ 하동읍 읍내리 190-2
라. 사 업 규 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239m, B=12m
마. 사 업 기 간 : 2020.07.31. ~ 2020.10.03. (변경)

### 2. 보상대상 : 토지(2필지, 452㎡) 등 (변경)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3. 공고기간 : 2020.10.07. ~ 2020.10.22.(15일간)

### 4. 이의신청 및 열람기간 : 2020.10.07. ~ 2020.10.22.(15일간)

###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계(☏ 055-880-2239)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마.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 [하동도시계획도로(중로3-8호선) 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 일련번호 | 소재지(하동군) | 지번(원래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감정평가 평균 | 보상금액 | 소유자 주소 | 소유자 성명 |
|---|---|---|---|---|---|---|---|---|
| 1 | 하동읍 읍내리 | 190-4 (190-2) | 답 | 185 | |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 이*희 |
| 2 | 하동읍 읍내리 | 190-5 (190-3) | 답 | 267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 *** | 박*철 |
| | 합계 | | | | | | | |

#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추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하동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아 래 -

○ 추천업체 :

○ 추 천 일 : 2020. . .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유자 | | 소유자확인 | 전화번호 | 비고 |
|---|---|---|---|---|---|---|---|
|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 이 의 신 청 서

| | | | | |
|---|---|---|---|---|
| ①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개설공사 | | | |
| ② 위 치 | | | | |
| ③ 사 업 시 행 자 | 하동군수 | | | |
|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⑤ 이의신청 내용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0 -1238호

# 군 계획시설(하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의견청취 공람공고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하동 도시계획도로(대로 2-1호선)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7.

## 하 동 군 수

###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2-2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 명 칭 : 하동 도시계획도로(대로 2-1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L=128m (전체 L=1,534m 중 금회 시행)(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하 동 군 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 수 : 기존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착 수 : 변경 - 2020. 7. 1.

◦ 준 공 : 기존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준 공 : 변경 - 2020. 6. 30.

바. 관계도면 : 실음 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055-880-2238)

나.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번호 | 위치 | | | 지적(㎡) | | | 지장물 | 소 유 자 |
|---|---|---|---|---|---|---|---|---|
| | 읍 면 | 지 번 (원래지번) | 지 목 | 총지적 | 편입면적 | | | |
| | | | | | 기존 | 변경 | | |
| 1 | 하동읍 읍내리 | 179-5 (179-2) | 답 | 255 | 52 | 52 | 1식 | 김종* |
| 2 | 하동읍 읍내리 | 179-6 (179-3) | 답 | 1891 | 292 | 287 | 1식 | 김영* |
| 3 | 하동읍 읍내리 | 180-9 (180-2) | 답 | 2478 | 595 | 592 | 1식 | 김동* 외 1인 |
| 4 | 하동읍 읍내리 | 209-10 | 도 | 232 | 100 | 100 | 1식 | 국토교통부 |
| 5 | 하동읍 읍내리 | 209-25 | 도 | 63 | 44 | 44 | 1식 | 임상* |
| 6 | 하동읍 읍내리 | 209-23 | 구 | 44 | 44 | 44 | 1식 | 한국농어촌공사 |
| 7 | 하동읍 읍내리 | 209-20 | 구 | 353 | 57 | 57 | 1식 | 하동군 |
| 8 | 하동읍 읍내리 | 209-14 | 대 | 382 | 208 | 208 | 1식 | 강한* 외 2인 |
| 9 | 하동읍 읍내리 | 222-13 | 대 | 99 | 34 | 34 | 1식 | 하동농업협동조합 |
| 10 | 하동읍 읍내리 | 223-11 | 도 | 99 | 7 | 7 | 1식 | 임상* |
| 11 | 하동읍 읍내리 | 223-10 | 도 | 65 | 65 | 65 | 1식 | 임상* |
| 12 | 하동읍 읍내리 | 223-8 | 도 | 99 | 99 | 99 | 1식 | 국토교통부 |
| 13 | 하동읍 읍내리 | 223-6 | 대 | 420 | 38 | 38 | 1식 | 김소* 외 1인 |
| 14 | 하동읍 읍내리 | 222-10 | 도 | 175 | 175 | 175 | 1식 | 국토교통부 |
| 15 | 하동읍 읍내리 | 203-1 | 철 | 7991 | 688 | 688 | 1식 | 국토교통부 |
| 16 | 하동읍 읍내리 | 222-24 (222-2) | 대 | 114 | 98 | 97 | 1식 | 강효* |
| 17 | 하동읍 읍내리 | 222-21 | 도 | 91 | 91 | 91 | 1식 | 하동군 |
| 18 | 하동읍 읍내리 | 222-11 | 도 | 172 | 172 | 172 | 1식 | 국토교통부 |
| 19 | 하동읍 읍내리 | 222-12 | 잡 | 72 | 46 | 46 | 1식 | 하동군 외 1인 |
| 20 | 하동읍 읍내리 | 1551-6 | 도 | 31 | 6 | 6 | 1식 | 기획재정부 |
| 21 | 하동읍 읍내리 | 222-22 | 도 | 24 | 24 | 24 | 1식 | 하동군 외 1인 |
| 22 | 하동읍 읍내리 | 218-2 | 구 | 26 | 26 | 26 | 1식 | 한국농어촌공사 |
| 23 | 하동읍 읍내리 | 1551-8 | 대 | 13 | 13 | 13 | 1식 | 하동군 |
| 24 | 하동읍 읍내리 | 1551-9 | 도 | 1 | 1 | 1 | 1식 | 기획재정부 |
| 25 | 하동읍 읍내리 | 1551-15 | 대 | 1 | 1 | 1 | 1식 | 기획재정부 |
| 26 | 하동읍 읍내리 | 218-18 | 잡 | 41 | 41 | 41 | 1식 | 하동군 |
| 27 | 하동읍 읍내리 | 140 | 구 | 2211 | 33 | 33 | 1식 | 농림축산식품부 |
| 28 | 하동읍 읍내리 | 180-1 | 도 | 298 | 55 | 55 | 1식 | 농림축산식품부 |
| 29 | 하동읍 읍내리 | 218-7 | 구 | 24 | 24 | 24 | 1식 | 한국농어촌공사 |
| 30 | 하동읍 읍내리 | 218-4 | 대 | 23 | 23 | 23 | 1식 | 서수* |
| 31 | 하동읍 읍내리 | 218-12 | 대 | 9 | 9 | 9 | 1식 | 하동군 |
| 32 | 하동읍 읍내리 | 218-17 | 도 | 10 | 10 | 10 | 1식 | 하동군 |
| 33 | 하동읍 읍내리 | 179-4 | 도 | 1994 | 1288 | 1288 | 1식 | 하동군 |
| 34 | 하동읍 읍내리 | 183-8 | 도 | 252 | 56 | 56 | 1식 | 김금* |

하동군 공고 제2020 - 1239호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의견청취 공람공고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7.

하 동 군 수

##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74-3 ~ 하동읍 읍내리 190-2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 명 칭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239m, B=12m(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하 동 군 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기존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착 수 : 변경 - 2020. 7. 31.

◦ 준 공 : 기존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준 공 : 변경 - 2020. 12. 03.

바. 관계도면 : 실음 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055-880-2238)

나. 공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22.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번호 | 위치 | | | 지적(㎡) | | 지장물 | 소 유 자 |
|---|---|---|---|---|---|---|---|
| | 읍 면 | 지 번 (원래지번) | 지 목 | 총지적 | 편입면적 | | |
| 1 | 하동읍 읍내리 | 174-7 (174-3) | 답 | 1,154 | 282 | 1식 | 하동군 |
| 2 | 하동읍 읍내리 | 187-4 (187-3) | 답 | 2,020 | 539 | 1식 | 하동군 |
| 6 | 하동읍 읍내리 | 188-3 (188-1) | 답 | 2,453 | 136 | 1식 | 하동군 |
| 9 | 하동읍 읍내리 | 188-4 (188-2) | 답 | 1,540 | 351 | 1식 | 하동군 |
| 10 | 하동읍 읍내리 | 190-4 (190-2) | 답 | 836 | 185 | 1식 | 이*희 |
| 11 | 하동읍 읍내리 | 190-5 (190-3) | 답 | 1,190 | 267 | 1식 | 하동군 지분 1/2 |
| 12 | 하동읍 읍내리 | 190-5 (190-3) | 답 | 1,190 | 267 | 1식 | 박*철 지분 1/2 |
| 13 | 하동읍 읍내리 | 191-3 (191-1) | 답 | 2,010 | 517 | 1식 | 하동군 |
| 14 | 하동읍 읍내리 | 194-5 (194-2) | 답 | 2,521 | 617 | 1식 | 하동군 |

하동군 공고 제2020 -1240호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의견청취 공람공고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7.

하 동 군 수

##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73-2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 명 칭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L=410.02m (전체 L=602m 중 금회 시행)(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하 동 군 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기존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착 수 : 변경 - 2020. 7. 31.

◦ 준 공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준 공 : 변경 - 2021. 10. 1.

바. 관계도면 : 실음 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055-880-2238)

나. 공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22.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면적 및 분할 지번 변경, 사업 외 토지 삭제

| 번호 | 위치 | | | 지적(㎡) | | 지장물 | 소 유 자 |
|---|---|---|---|---|---|---|---|
| | 읍 면 | 지 번 (원래지번) | 지 목 | 총지적 | 편입면적 | | |
| 1 | 하동읍 읍내리 | 173-8 (173-2) | 전 | 174 | 174 | 1식 | 하동군 |
| 2 | 하동읍 읍내리 | 173-10 (173-4) | 대 | 797 | 165 | 1식 | 정*근 |
| 3 | 하동읍 읍내리 | 173-9 (173-3) | 답 | 2,007 | 166 | 1식 | 하동군 |
| 4 | 하동읍 읍내리 | 174-4 (174-1) | 답 | 1,319 | 109 | 1식 | 하동군 |
| 5 | 하동읍 읍내리 | 174-6 (174-2) | 답 | 2,750 | 229 | 1식 | 하동군 |
| 7 | 하동읍 읍내리 | 174-5 (174-3) | 답 | 1,326 | 172 | 1식 | 하동군 |
| 8 | 하동읍 읍내리 | 194-4 (194-2) | 답 | 2,691 | 170 | 1식 | 하동군 |
| 9 | 하동읍 읍내리 | 194-3 (194-1) | 답 | 1,997 | 163 | 1식 | 하동군 |
| 10 | 하동읍 읍내리 | 193-10 (193-3) | 답 | 1,190 | 113 | 1식 | 하동군 |
| 13 | 하동읍 읍내리 | 193-9 (193-2) | 종교용지 | 1,058 | 16 | 1식 | 하동군 |
| 14 | 하동읍 읍내리 | 193-10 (193-4) | 종교용지 | 628 | 5 | 1식 | 하동군 |
| 15 | 하동읍 광평리 | 2-3 | 답 | 370 | 370 | 1식 | 하동군 |
| 16 | 하동읍 광평리 | 2-8 | 답 | 476 | 476*2099/4198 | 1식 | 하동군 |
| 17 | 하동읍 광평리 | 2-8 | 답 | 476 | 476*2099/4198 | 1식 | 최*순 |
| 20 | 하동읍 광평리 | 265-2 | 철도용지 | 7,032 | 402 | 1식 | 국(국토교통부) |
| 21 | 하동읍 광평리 | 80 | 철도용지 | 17,456 | 83 | 1식 | 국(국토교통부) |
| 22 | 하동읍 광평리 | 6-3 (6-1) | 답 | 1,954 | 48 | 1식 | 이*자 |
| 23 | 하동읍 비파리 | 743-1 (743) | 답 | 3,140 | 279 | 1식 | 하동군 |